



지 식 경 제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정계량단위로 제작·수입된 계량기 및 상품의 사용 준수 협조 요청

1. 귀(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거래의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SI)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제작업체나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제작업체나 수입업체가 법정계량단위로 제작된 계량기나 상품(압력, 온도, 길이 단위 등)을 제작 및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하여도 사용자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계량단위) 및 시행령 제8조(법정계량단위)로 제작된 상품의 사용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귀원(사)의 관련 사업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업체나 수입업체는 고객이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의 납품 요구가 있더라도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모범이 되어 주시길 협조 요청 드립니다. 끝.

